

## 理事會 및 支部長會議 개최

本協會는 8월9일과 8월26일, 安箕泰 회장 주재로 제 7 회 理事會와 제 8 회 理事會를 개최하고 協會가 추진중인 업무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또 8월25일에는 제 3 회 支部長會議를 개최하고 추진중인 업무 및 懸案 등 협회 업무 전반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각각 협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 7 회 理事會

일시: 1988. 8. 9(화) 14:00~  
장소: 본협회 회의실

#### \*부의사항 의결내용

• 1989년도 예산편성지침(안): 1989회계년도 본부 및 각시도지부 예산편성을 위하여 회계규정 제26조에 의거 제 1 회 예산편성위원회(88. 8. 5)에서 협의 결정된 대로 예산편성지침(안)을 작성, 부의사항으로 상정한 바 심의결과 원안대로 승인.

#### \*협의사항 의결내용

• 건축관계법령 개정추진방향:  
가. 종합추진기구 설치: 법개정관련 종합추진기구를 설치키로 하며 명칭 및 구성은 회장에 위임.  
나. 공청회 개최: 공청회를 개최키로 하고 추진담당위원회 구성과 예산확보문제 등 추진방법은 회장에 위임.

### 제 8 회 理事會

일시: 1988. 8. 26(금) 10:00~  
장소: 본협회 회의실

#### \*부의사항 의결내용

• 건축설계비 감면여부:  
강원도 지부장으로부터 78. 9. 25일자로 본협회에서 각시도지부에 지시한 「설계 및 공사감리비 감면에 관한 건」에 대한 동문서 지시의 효력상실 여부를 질의하였기 본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토록 부의한 바 심의결과 환원하여 감면하지 않기로 결정함.

(경위)  
가. 본협회에서 지사 226-612('78. 9. 25) 호로 시달된 문서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소도읍가꾸기사업 추진에 따른 건축설계비 감면 협조지시에 따라 동 소도읍 환경가꾸기 사업으로 인하여 설계된 건축물을 개축하거나 증축할 경우는 새마을 사업으로 건설되는 새마을회관(330㎡ 미만)과 공중목욕장(165㎡ 미만)의 예와 같이 동 설계요율은 설계감리 보수요율의 50%를 설계 보수요율로 적용 정부시책에 호응하기로 제 19 회 이사회('78. 9. 22)에서 결의하여 78. 10. 1부터 시행토록 지시된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취락구조 개선사업, 소도읍 가꾸기 또는 소도읍 정비사업 등 유사한 형태의 행정력이 미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감면의뢰되므로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에서는 대부분의 건축물이 이와 관련된 건으로서 회원업무의 경제적 손실이 크다 함.

(강원도지부 의견)  
회원 자의에 의한 경제적 협조는 장기적일 수 있으나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경제적 협조는 일시적이어야 하므로 동 문서의 감면 지시는 10년이 지난 현 실정에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겠으며, 지부자체에서 이에 따른 조치를 행정기관에 취하고 정상적인 보수규정에 따라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참고)  
건축사업 및 보수기준 별표1(건축물의 설계, 감리 보수요율표)의 하단(주:3)에 새마을 사업으로 부락민이 공동으로 건축하여 사용하는 새마을회관

(330㎡ 미만)과 공중 목욕장(165㎡ 미만)의 설계 및 감리보수요율은 설계·감리 보수요율의 50%로 한도로 되어 있으나 문재의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취락구조 개선사업, 소도읍가꾸기사업 등에 대하여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건축사 및 건축사보 직접인건비기준 변경: 기술용역육성법 시행령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 댓가의 기준중 노임 단가기준이 개정공고(과학기술처 공고 제 88-156 호 88. 8. 6)되어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인건비 기준액을 건축사업 및 보수기준 제 24 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코자 부의한 안건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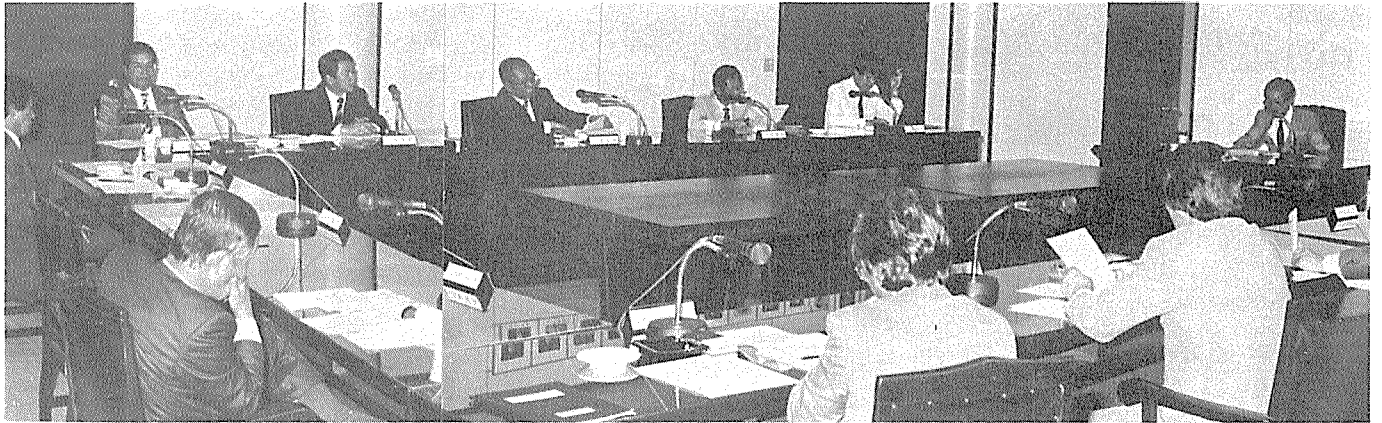
• 건축사업 및 보수기준 개선을 위한 용역여부: 건축사업 및 보수기준 개선을 위한 전문용역업체에의 용역의뢰 여부를 결정코자 부의한 바 심의결과 용역을 의뢰키로 하되 용역비는 1989년도 예산에 편성, 사전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키로 결의.

• 실적회비 산출기준 현실화: 실적회비 산출기준의 현실화 여부를 결정토록 부의한 안건으로서 심의결과 30% 선에서 상향 조정하여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되 그에 따른 조건표를 작성, 다음 이사회에서 다시 협의 결정키로 함.

•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개정: 서울지부와 경기지부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에 대한 개정 건의가 있어 심의결과,

개정된 직접인건비 기준

구 분	직접인건비		학력 및 경력의 기준			비 고
	현행	변경	학 사	전문대졸	공고졸	
건축사	64,700	72,500	-			특급기술자
건축사보(고급)	49,500	55,400	10년이상	12년이상	14년이상	고급기술자
건축사보(중급)	36,100	40,400	5년이상 10년미만	7년이상 12년미만	9년이상 14년미만	중급기술자
건축사보(초급)	24,100	27,000	5년미만	5년이상 7년미만	7년이상 9년미만	초급기술자
보 조 원	15,100	17,400		5년미만	7년미만	중급기능자



▲ 제 8 회 理事會

가. 서울지부 개정건의(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나. 경기지부 개정 건의는 회원수와 업무량을 감안한 직제기준을 설정, 다음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다. 본부개정(안)은 원안대로 승인키로 결의.

〈참고 : 개정건의내용〉

- 서울지부 개정건의(안): 직위에 따른 직급을 구분코자 하며 그에 따라 직급별 직원 정원을 조정코자 함.  
부장은 2급 또는 3급에서 3급으로  
과장은 3급 또는 4급에서 4급으로
- 경기지부 개정건의(안): 소속지부 회원의 증가와 업무량의 증가로 인하여 현재 1과(총무과)로 되어 있는 직제를 1부1과(총무부 총무과)로 확대코자 함.
- 본부개정(안): 건축사 연금담당 직원(여) 1명 증원
- 일본건축사회연합회 회장단, ACA-3대회 초청여부 : 본협회와 일본건축사회연합회는 매년 격년제로 회장단을 총회(전국대회)에 상호 초청해 왔으며 금년에는 본협회가 ACA-3 대회에 일본건축사회연합회 회장단 일행을 자비 부담하에 11월8일~10일까지 3일간 초청코자 하는 바 협의결과 초청키로 함.
- ACA-3대회 추진위원 임기 : ACA-3대회 추진위원은 지부장들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임 지부장들의 임기가 ACA-3 대회 개최 직전인 10월말까지로 되어 있으므로 동위원직도 10월말까지만 하고 새로 선임되는 신입 지부장들이 해야 하는지 또는 현재의 지부장이 계속 ACA-3 대회의

추진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협의결과 오는 10월 지부총회에서 지부장이 개선될 경우에는 현행규정에 따라 신입지부장이 위원직을 맡도록 하되 구 지부장을 우대하여 명예위원 등의 자격으로 참여시키기로 협의.

### 제 3 회 支部長會議

일시 : 1988. 8. 25(목) 14 : 00~  
장소 : 본협회 회의실  
참석 : 이사, 감사, 시도지부장

- 세미나(공청회) 개최 협의 : 법개정에 따른 기초 설문을 작성, 지부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 실시토록 하며 세미나 주제와 일시 장소 등은 사무처에서 결정하되 올림픽 종료 직후에 실시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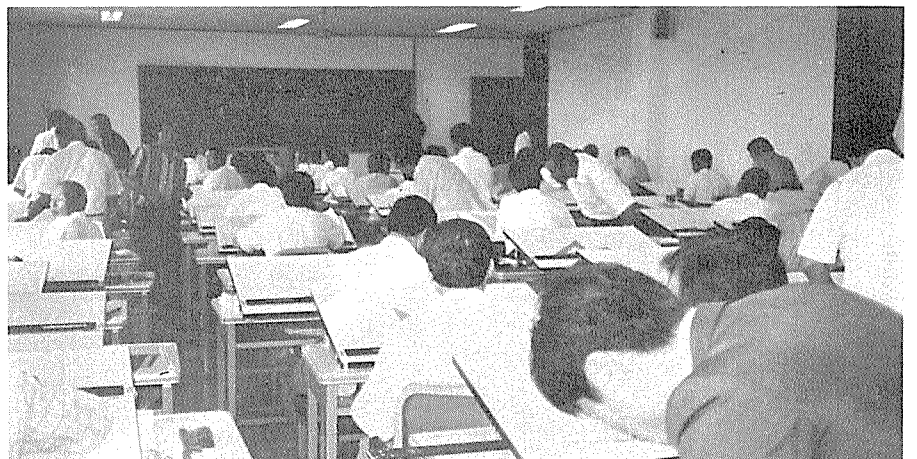
-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 개선을 위한 용역여부 협의 : 정기총회에서 승인후 실시하면 늦은 감이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개선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키로 함.

- 실적회비 산출기준 현실화에 대한 협의 :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인상하도록 함.

## 建築士資格 特別銓衡 추가시험

건설부는 9월4일(일) 仁川 소재 建設技術教育院에서 건축사자격 특별전형 추가시험을 실시하였다.

4백46명으로부터 응시원서를 접수, 그중 4백34명이 응시한 이번 시험결과 10월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 건축사자격 특별전형 추가시험 광경

# 協會消息

## 88 定期監查 실시

본협회는 제23회 定期總會의 개최를 앞두고 9월5일~10월19일 사이에 본부를 비롯한 14개 시도지부의 88년도 定期監查를 실시한다.  
감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본협회 감사일정표

지부별	기간('88)	지부별	기간('88)
제주	9. 5~6	충남	9. 23~24
부산	9. 7~8	충북	9. 29~30
경남	9. 9~10	강원	10. 4~5
광주	9. 12~13	경기	10. 6~7
전남	9. 14~15	인천	10. 10~11
전북	9. 16~17	서울	10. 12~14
대구	9. 19~20	본부	10. 17~19
경북	9. 21~22		

## 慶尚北道支部消息

(지부장 金永吉)

• 金永吉지부장, 交響樂團 창단 고전음악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진 金永吉 지부장이 私財를 들여 浦項交響樂團을 창단, 향토예술 발전에 힘쓰고 있어 문화예술계에 훈훈한 감격을 주고 있다.

“음악예술이 인간에게 미치는 정신적 가치가 어떤 예술보다도 우선”하기 때문에 “건강한 사회를 형성하는데 절대적 요소”가 된다고 믿는 金永吉지부장은 이 交響樂團의 창단이 “포항의 비약적인 발전에 발맞출 수 있도록 문화예술면의 활발한 활동”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젊은 음악애호가를 겨냥, 비발디 콘체토 op. 3 No.9와 헨델의 모음곡 수상음악등으로 프로그램을 짜 최능식씨의 지휘하에

7월29일 창단공연을 한 포항교향악단은 자신 특유의 개성적인 소리를 창조하려는 열의로 가득차 있어 앞으로의 활동에 큰 기대를 걸게 하고 있다.

오는 10월에는 가곡과 아리아의 밤을 열고 12월에는 송년음악회로 제 2회 정기연주를 할 것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단원구성은 다음과 같다.

악장: 정성봉

총무: 서해진

바이올린(18): 정성봉, 신문식, 최원영, 이명주, 윤교숙, 김민애, 구신애, 장현석, 김윤경, 이은미, 김혜경, 김일영, 김봉호, 윤상철(협), 권동호(협), 박은주(협), 이윤경(협), 전재우(협)

비올라(6): 최문열, 성혜영, 박선영, 마정옥, 신용희, 박미애(협)

첼로(6): 서해진, 김보경, 김진, 이상률, 이광미, 조태선(협)

콘트라 베이스(3): 정진복, 유양환(협), 정희중(협)

플루트(2): 박순걸, 김민정

오보(2): 김동인(협), 오정미(협)

클라리넷(2): 홍순규, 김해득

바순(2): 현필선(협), 전만익(협)

테너 색스폰(1): 이선형

엘토 색스폰(1): 오석권

호른(2): 황홍근, 장용표

트럼펫(2): 송수용, 정희택

토롬본(3): 이승화, 이상대(협), 김경태

탐파니(1): 장석기

타악기(3): 김의열, 구동희, 백계순

• 제2회 영남건축사 친선골프대회

8월24일 경주 조선칸트리클럽에서 경북지부 주관으로 제2회 영남 건축사 친선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부산지부 회원 19명, 대구지부 회원 11명, 경남지부 회원 14명, 경북지부 회원 7명 등 51명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룬 가운데 진행된 본대회 경기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우승: 박문용(경남지부)

- 메달리스트: 장학선(경북지부)

- 준우승: 서천수(경남지부)

- 3위: 장기용(대구지부)

- 룡게스트: 이영기(경북지부)

- 니얼리스트: 도정기(경북지부)

- 행운상: 김화자(대구지부)

- 버디상: 여육동(대구지부)

- 파상: 양정부(부산지부)

- 보기상: 김신재(부산지부)



◀ 영남지역건축사친선골프대회



7월29일 개최된 포항교향악단 창단공연(지휘: 최능식)